

근무성적 등 평정 관련 Q&A

Q1. 학교에서 근무성적 등 평정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은?

A1

1.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용과 교사용 양식이 다르므로 주의
2. 근무성적평정표 및 자기실적평가표의 평정기간, 작성날짜 확인
(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9조 및 제28조의2에 의거, 평정기간 수정 금지)
3. 평정자(교감), 확인자(교장) 및 학교 직인 날인 여부를 확인
4. 근무성적 평정상황표는 정확한 인원을 파악한 후 작성
5. 교사 다면평가 관련 서류([별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서식]) 작성요령 숙지
6. 징계결과나 행정처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

Q2. 징계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방법은?

A2

구분	징계 및 불문(경고)			행정 처분	
	중징계 (강등, 정직)	경징계 (감봉, 견책)	불문(경고)	경고	주의
평정 기준	'수', '우' 불가	'수' 불가	1회당 2.5점 감점	1회당 0.3점 감점	2회에 0.1점 감점 (추가 1회당 0.1점 추가 감점)

※ 감점 영역 : 조정점에서 감점

※ 다만, 종합감사 등으로 동일자에 받은 동일한 행정처분은 2회 이상 받은 경우라도 1회로 간주함.

(예1) 2025.5.16. 종합감사 시 경고 1회, 주의 2회를 받은 경우 → 경고 1회, 주의 1회

(예2) 2025.5.16. 종합감사 시 주의 3회, 2025.10.17. 특별감사 시 주의 1회를 받은 경우 → 주의 2회

※ 불문(경고) 이상의 처분자는 「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」 항목에서 평정자, 확인자 모두 만점 평정 불가

Q3. 겸임 및 파견근무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방법은?

A3

1.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, 교육행정기관,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은 평정할 수 없음
2. 2개월 이상 경기도교육청 관할 교육기관, 교육행정기관, 교육연구기관에 파견자는 현소속교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현소속교에서 평정함
(단,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제4호, 제7호 파견은 제외)
3. 2개월 이상 교육부 관할 교육기관, 교육행정기관, 교육연구기관에 파견자 및 해외교육기관 파견자도 현소속교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현소속교에서 평정함.
(단,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제4호, 제7호 파견은 제외)